

##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특별조사 결과 조치사항

기관명	지적 및 조치 요구							
<b>문화체육관광부</b>  <b>한국문화예술</b> <b>교육진흥원</b>	<p>○ A는 직무와 무관한 외부강의에 참석하면서(4회)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용차량을 이용함</p>							
	연번	일자	외부강의 활동내용	장소	공용차량 이용내역	교통비 산출내역(단위:원)		
						유류비	통행료	합계
	1	2019.03.29.	ㄱㄱ	서울시 (종로구)	편도 (9.4km)	1,380	-	1,380
	3	2019.06.21.	ㄴㄴ	서울시 (중구)	왕복 (21.4km)	3,390	-	3,390
	4	2019.08.06.	ㄷㄷ	서울시 (종로구)	왕복 (24km)	3,780	-	3,780
	5	2019.11.08.	ㄹㄹ	서울시 (종로구)	왕복 (18.8km)	3,040	-	3,040
	<b>합 계</b>					<b>11,590</b>	<b>-</b>	<b>11,590</b>
	<p>※ 교통비 산출: 진흥원 전용차량 이용에 따른 유류비(운행거리(km)×당해 일자 휘발유 유가÷연비(9.5km/l)) 및 통행료</p>							
	<p>○ 또한, 직무와 관련이 있는 외부강의를 하면서(1회) 주관기관으로부터 교통비가 포함된 강의비 30만 원을 지급받고도 전용차량을 이용함</p>							
연번	일자	외부강의 활동내용	장소	공용차량 이용내역	교통비 산출내역(단위:원)			
					유류비	통행료	합계	
1	2019.05.30.	ㅁㅁ	청주시 (청원구)	왕복 (314km)	50,810	11,750	62,560	
<p>○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「차량관리지침」 상 전용차량에 대한 사용 또는 제한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</p>								
<p>☞ A에 대해 ‘구두주의’ 촉구, A의 부적정한 전용차량 사용에 따른 유류비, 통행료 등 총 74,150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, 진흥원 「차량관리지침」 상 전용차량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요구</p>								